

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4. 6. 25.>

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,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(제16조제1항 관련)

사업의 종류	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	안전관리자의 수	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
1. 토사석 광업 2. 식료품 제조업, 음료 제조업 3. 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 제외 4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 가구 제외 5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 8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.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	1명 이상	별표 4 제1호, 제2호, 제4호, 제5호, 제6호(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한다), 제7호(이 표 제27호에 따른 사업만 해당한다), 제7호의2(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한다)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.
10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. 1차 금속 제조업 12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 13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5. 전기장비 제조업 16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. 가구 제조업 20. 기타 제품 제조업 21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	상시근로자 500명 이상	2명 이상	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7호(이 표 제27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,000명 미만의 사업장만 해당한다)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. 다만, 별표 4 제1호, 제2호(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) 및 제4호 중 어

<p>업</p> <p>22.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</p> <p>23. 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</p> <p>24. 환경 정화 및 복원업</p> <p>25. 자동차 종합 수리업, 자동차 전문 수리업</p> <p>26. 발전업</p> <p>27. 운수 및 창고업</p>			<p>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</p>
<p>28. 농업, 임업 및 어업</p> <p>29. 제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</p> <p>30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발전업은 제외한다)</p> <p>31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(제23호 및 제2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)</p> <p>32. 도매 및 소매업</p> <p>33. 숙박 및 음식점업</p> <p>34.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</p> <p>35.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</p> <p>36. 우편 및 통신업</p>	<p>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. 다만, 제37호의 사업(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)과 제40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한다.</p>	<p>1명 이상</p>	<p>별표 4 제1호, 제2호, 제3호(이 표 제28호, 제30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업만 해당한다), 제4호, 제5호, 제6호(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한다), 제7호(이 표 제36호에 따른 사업만 해당한다), 제7호의 2(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한다)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.</p>
<p>37. 부동산업</p> <p>38. 임대업; 부동산 제외</p> <p>39. 연구개발업</p> <p>40. 사진처리업</p> <p>41.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</p> <p>42.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</p> <p>43. 보건업</p> <p>44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</p> <p>45.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</p>	<p>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</p>	<p>2명 이상</p>	<p>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. 다만, 별표 4 제1호, 제2호, 제4호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</p>

<p>(제2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)</p> <p>46. 기타 개인 서비스업</p> <p>47. 공공행정(청소, 시설관리,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)</p> <p>48.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·중등·고등 교육기관, 특수학교·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(청소, 시설관리,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)</p>			
<p>49. 건설업</p>	<p>공사금액 50억 원 이상(관계수급인은 100억 원 이상) 120억 원 미만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 미만)</p>	<p>1명 이상</p>	<p>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.</p>
	<p>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 이상) 800억 원 미만</p>		<p>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.</p>
	<p>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1,500</p>	<p>2명 이상. 다만, 전체 공사</p>	<p>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</p>

<p>억원 미만</p>	<p>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 (이하 “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”이라 한다) 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한다.</p>	<p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 되, 같은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</p>
<p>공사금액 1,500억원 이상 2,200억원 미만</p>	<p>3명 이상. 다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.</p>	<p>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 되,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될 수 있고, 같은 표 제1호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(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) 자격을 취득한 사람(이하 “산업안전지도사</p>
<p>공사금액 2,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</p>	<p>4명 이상. 다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.</p>	<p>를 포함한다) 자격을 취득한 사람(이하 “산업안전지도사</p>

		등”이라 한다)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공사금액 3천 억원 이상 3,900 억원 미만	5명 이상. 다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 에 해당하는 기 간은 3명 이상 으로 한다.	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 임하되, 같은 표 제12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1명만 포함될 수 있고, 산업안전지도 사등이 2명 이상 포 함되어야 한다. 다 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 당하는 기간에는 산 업안전지도사등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공사금액 3,900 억원 이상 4,900 억원 미만	6명 이상. 다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 에 해당하는 기 간은 3명 이상 으로 한다.	별표 4 제1호부터 제 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선임하되,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 명까지만 포함될 수 있고, 산업안전지도 사등이 2명 이상 포 함되어야 한다. 다 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 당하는 기간에는 산 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공사금액 4,900 억원 이상 6천 억원 미만	7명 이상. 다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 은 4명 이상으 로 한다.	별표 4 제1호부터 제 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선임하되,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 명까지만 포함될 수 있고, 산업안전지도 사등이 2명 이상 포 함되어야 한다. 다 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 당하는 기간에는 산 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공사금액 6천 억원 이상 7,200 억원 미만	8명 이상. 다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 은 4명 이상으 로 한다.	별표 4 제1호부터 제 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선임하되,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 명까지만 포함될 수 있고, 산업안전지도 사등이 2명 이상 포 함되어야 한다. 다 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 당하는 기간에는 산 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공사금액 7,200 억원 이상 8,500 억원 미만	9명 이상. 다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	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 호의 어느 하나에

		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.	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,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까지만 포함될 수 있고,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	공사금액 8,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	10명 이상. 다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.	
	1조원 이상	11명 이상[매 2천억원(2조원 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)마다 1명씩 추가한다]. 다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분의 1(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) 이상으로 한다.	

비고

1.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.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2.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.